

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[시행 2021.01.01] [대통령령 제31297호, 2020.12.29., 타법개정]

제1장 총칙

제1조 (목적)

이 영은 「원자력 진흥법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2장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운영

제2조 (위원장의 직무 등)

- ① 「원자력 진흥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3조에 따른 원자력진흥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위원장(이하 "위원장"이라 한다)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.
-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3조 (회의)

-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- ②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.
- ③ 위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회의가 열리기 1주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·장소와 심의사항을 각 위원에게 서면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으로 알려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미리 의안을 정리하여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회의에 부쳐야 한다.
-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4조 (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)

- ① 위원회의 소관 업무를 전문적으로 조사·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(이하 "전문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-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비상근 전문위원(이하 "전문위원"이라 한다)으로 구성한다.
-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, 그 밖의 위원은 원자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기관의 직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추천으로 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7.7.26>
- ④ 전문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, 그 구성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.

제4조의2 (위원의 해임 및 해촉)

- ① 대통령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(해촉)할 수 있다.
 1.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
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 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 4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
- ② 위원회 위원장은 전문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.

제5조 (조사 · 연구 등의 의뢰)

- ① 위원회, 전문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내외의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해당 사항에 대한 조사 · 연구 또는 자료 제공을 의뢰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· 연구 또는 자료 제공을 의뢰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6조 (의견 청취)

위원회, 전문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그 소관 사항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의견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제7조 (수당 등)

위원회, 전문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, 전문위원, 관계인 및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업무수행에 드는 실비(실비)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8조 (회의록)

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.

제9조 (운영 세칙)

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 제3장 원자력진흥종합계획 및 원자력의 연구 등

제10조 (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)

법 제9조제4항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원자력진흥종합계획(이하 "종합계획"이라 한다)의 부문별 과제의 세부 추진에 관한 사항
2. 종합계획의 내용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맞는 사항

제11조 (연구개발사업 등)

- ①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주관연구기관 (이하 "주관연구기관"이라 한다)의 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사업(이하 "연구개발사업"이라 한다) 수행에 드는 비용(이하 "연구개발비"라 한다)의 일부를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술개

발비(현물을 포함한다) 등으로 총당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당사자와 출자계약 또는 연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연구과제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자와 협동하여 또는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, 2017.7.26>

1.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

2. 해당 분야의 전문가

③ 법 제19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대해서는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 제25조 및 제26조를 준용한다. <개정 2020.12.29>

제12조 (기술료의 징수 · 면제 및 사용실적 보고)

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면제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15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, 그 해의 기술료 사용실적은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7.7.26>

제13조 (산업재산권 등의 공동소유)

법 제12조제7항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"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.

1. 「원자력안전법」 제22조제1항에 따른 발전용원자로운영자(이하 "발전용원자로운영자"라 한다)

2. 제11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자

제14조 (연구개발비 부담금)

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(이하 "부담금"이라 한다)은 그 원자로를 운전하여 생산한 전전년도 전력량에 킬로와트시간당 1.2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. <개정 2016.12.30>

제15조 (부담금의 납부)

①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부담금 납부명령은 분기마다 납부금액,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납부금액은 전전년도의 해당 분기에 원자로를 운전하여 생산한 전력량을 기준으로 산정(산정)하며,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20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12.30>

③ 부담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, 지체 없이 수납事實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7.7.26>

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납부한 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제 납부해야 할 부담금과 금액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담금을 정산하여 그 차액을 추가로 징수하거나 환급해야 한다. <신설 2019.8.20>

1.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오류 등으로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전력량이 잘못 적용된 경우

2. 착오 납부 또는 이중 납부 등으로 납부가 잘못되었음이 확인된 경우

제15조의2 (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)

- ①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제15조에 따라 납부 고지된 부담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납부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
-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.

제16조 (연구개발사업 및 부담금에 관한 세부규정)

연구개발사업의 시행과 부담금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7.7.26>

제17조 (실태조사의 위탁실시)

- ①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"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7.7.26>
 1.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
 2. 「민법」 제32조와 「공익법인의 설립 ·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설립을 허가한 비영리법인
-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자로 하여금 원자력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게 한 경우에는 그 조사에 드는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, 2017.7.26> 제4장 원자력기금 <개정 2015.12.22>

제18조 (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사용)

법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자력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되는 사업"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7.7.26>

1.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획 · 관리 및 평가 사업
2.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19조 (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회계기관)

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원자력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 중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계정(이하 "원자력연구개발계정"이라 한다)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, 기금재무관,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7.26>

제20조 (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한국은행 계정 설치)

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수입 및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5.12.22, 2017.7.26>

제21조 (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회계연도)

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 <개정 2015.12.22>

제22조 (원자력연구개발계정 여유자금의 운용방법)

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원자력연구개발계정에 여유자금이 있으면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증권을 매입하거나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, 2015.12.22, 2017.7.26>

제22조의2 (원자력연구개발계정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)

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원자력연구개발계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「한국연구재단법」에 따른 한국연구재단(이하 "한국연구재단"이라 한다)에 위탁한다. <개정 2017.7.26>

1.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관리 · 운용에 관한 회계 사무
2.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
3.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사무
4. 그 밖에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관리 · 운용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무

② 제1항에 따라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관리 · 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연구재단의 이사장은 그 소속 부서장 중에서 기금수입담당부서장과 기금지출원인 행위 담당부서장을, 소속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을 각각 임명하고,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부서장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업무를, 기금지출원인 행위 담당부서장은 기금재무관의 업무를, 기금지출원은 기금지출관의 업무를,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업무를 위탁받은 업무의 범위에서 각각 수행한다. <개정 2017.7.26>

제23조 (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운용 규정)

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관리 ·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5.12.22, 2017.7.26>

제24조 (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관리 · 운용)

기금 중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관리 ·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「원자력안전법 시행령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제5장 벌칙 <신설 2018.7.31>

제25조 (과태료의 부과기준)

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.

부칙 <제23249호, 2011.10.25>

제1조(시행일)

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 및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)

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「원자력법 시행령」(이하 "종전 규정"이라 한다)에 따른 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, 소위원회 및 그 위원은 이 영에 따른 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, 소위원회 및 그 위원으로 본다.

제3조 (종전의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)

이 영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한 원자력의 연구·개발·생산·이용에 관한 처분·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 이 영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.

제4조 (다른 법령의 개정)

①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0조제3호 중 「원자력법」 제9조의2²를 「원자력 진흥법」 제12조²로 한다.

② 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이용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

중 "원자력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"을 「원자력 진흥법 시행령」 제4조²로 한다.

제5조 (다른 법령과의 관계)

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「원자력법 시행령」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

부칙(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24423호, 2013.3.23>

제1조(시행일)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

제7조 (다른 법령의 개정)

① 부터 <65>까지 생략 <66> 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조제3항,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12조, 제15조제3항, 제16조, 제17조 제1항제2호, 같은 조 제2항, 제18조제2호, 제19조, 제20조, 제22조 및 제23조 중 "교육과학기술부장관"을 각각 "미래창조과학부장관"으로 한다.

<67>부터 <105>까지 생략

부칙 <제26733호, 2015.12.22>

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) <제26844호, 2015.12.31>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7706호, 2016.12.30>

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28210호, 2017.7.26>

제1조(시행일)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

제6조 (다른 법령의 개정)

① 부터 <43>까지 생략 <44> 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조제3항,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12조, 제15조제3항, 제16조, 제17조 제1항제2호, 같은 조 제2항, 제18조제2호, 제19조, 제20조, 제22조, 제2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항 제4호,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23조 중 "미래창조과학부장관"을 각각 "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"으로 한다.

<45>부터 <70>까지 생략

부칙 <제29070호, 2018.7.31>

제1조(시행일)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)

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 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

부칙 <제30046호, 2019.8.20>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) <제31297호, 2020.12.29>

제1조(시행일)

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

제7조 (다른 법령의 개정)

①부터 ⑯까지 생략

⑯ 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1조제3항 중 「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」 제19조제1항을 "을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 제25조 및 제26조를"로 한다.

<16>부터 <20>까지 생략

제8조 생략